

세무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2009년 9월 pp.181~217
한국세무학회

IFRS 도입에 따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과의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

김경호** · 정영기*** · 윤재원**** · 박수환*****

<요 약>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이 제정되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간편하면서도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켜줌과 동시에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세무관련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여 46개 항목의 주요차이를 식별하였으며, 세법과 회계기준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조화가 가능한 항목 중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12개 항목과 세법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양쪽에서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회계 및 조세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특성, 세법규정 수용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세법개정의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설문을 등간 5점 척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신용의사결정을 위한 유용성 제고이며, 아울러 작성자의 이해가능성 제고와 회계처리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단기건설공사손익의 인식규정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법에서 회계기준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및 감액손실의 인정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삼일회계법인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kim0124@paran.com, 02-320-1702,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ungyk57@hotmail.com, 02-320-1739,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jwyst1@hanmail.net, 02-320-1725, 교신저자

*****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shpark@samil.com, 02-709-0705, 주저자

한편, 비상장기업은 그 규모나 특성 면에서 매우 다양하므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비상장 대기업’, ‘일반 비상장기업’, ‘특례적용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특례 적용 대상인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기준과 세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대폭적으로 조화된 내용으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일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세법의 양방향에서 실행 가능한 조화방향을 모색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반영한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내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한다.

<주제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세법규정의 수용, 세법개정의 필요성

I. 서 론

한국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무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은 2009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청회에 따르면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편람식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 2008.7.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에 비해 회계처리 및 공시규정이 단순하나 여전히 공정가치의 측정, 보험수리적 계산 등의 복잡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바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도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으로 볼 때 앞으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이원화된 회계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많고 복잡한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보다 정교하고 방대한 양의 회계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적고 단순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작성의 편의와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원화된 회계시스템 하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조화의 문제도 이원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해야하는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국내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또는 감독기구에 제정권한이 없는 국제회계기준을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보고,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야기되는 여러 세무문제를 국내세법의 개정을 통해 풀어가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국내에 회계기준의 제정권이 있으므로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회계기준의 제정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해소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대형 비상장기업을 제외하면 18,000여개(2008년말 기준)에 달하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기업의 경우 채권자를 제외한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

재무회계기준의 제정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간 문제가 되어온 기업회계와 세법의 불일치로 인한 세무조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여러 공청회에서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재무회계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물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그 기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치는 불가능할 것이며, 일부의 문제는 세법의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세법과의 조화방향에서 회계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의 이론적 토대와 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실행방안과 결론을 제시한다.

II.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의 이론적 토대 및 제정 방향

1.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목적

가.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근거 및 개념

주주와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장기업의 경우와 달리 공공회계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상법 등 법적 요구에 의해 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하여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된다.¹⁾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주로 규모에 있어 상장기업 보다는 영세한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2007년 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 IASB)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ities : SMEs)이 적용하기 적합한 기준의 공개초안(이하 ‘IFRS for SMEs’)을 발표하였는데 위원회는 직원이 약 50명 정도인 전형적인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이 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적인 회계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Full IFRS를 적용대상으로 정의하였다.

- ① 공개 시장에서 채무나 지분 증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중인 회사
- ②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증권 브로커/딜러, 연금, 뮤추얼 펀드나 투자은행 등 다수의 외부위탁 재산을 보유하는 기업

1) 2009년 1월 6일자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감대상 기업은 자산규모 7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대상이 축소 조정 되었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를 ①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②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과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하는 채권자, ③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한다(문단 12).

비상장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의 기본개념을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때 상장기업의 경우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재무정보의 보고대상이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채권자와 감독당국 등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비상장기업에 적용한다면 재무보고의 개념과 목적 등에 있어 다소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나.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

비상장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를 상장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상장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무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즉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주는 1인 또는 친족 등 소수의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무정보의 접근성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외부자로 분류하기 어렵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면 공공회계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의 기타 정보이용자로 분류된 재무분석가의 경우 주로 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분석이 주업무이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된 재무정보 이용자는 채권자와 조세당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세당국의 경우 조세당국은 기본적으로 기업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세무신고서는 재무제표에 속하는 손익계산서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세무신고서상 과세소득산출의 상당부분이 손익계산서상 수치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대적인 영업의 단순성으로 그 정도가 상장기업의 경우보다 더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간접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큰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비상장기업 재무보고 목적과 질적 특성

(1) 재무보고 목적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은 비상장기업의 주된 정보이용자가 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 채권자라는 점에서 주된 정보이용자가 주주 등 투자자인 상장기업의 재무보고 목적과 다소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목적은 채권자 등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로부터 도출된다. 비상장기업의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로서 이들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을 채권자의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란 투자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채권자가 합리적인 신용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및 잠재의 채권자가 합리적 신용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이자와 채권의 만기가액 등이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재무보고는 당해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금대여자 및 공급자 등과 같은 채권자는 당해 기업실체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실체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순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기업실체 유지에 필요한 투자에 충당하고,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상환한다. 그러므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은 배당 및 이자 지급과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가치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채권자 등에 대한 미래 현금유입액과 기업가치는 당해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의 미래 현금유입이나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 의무 및 자본에 관한 재무상태 정보는 채권자가 당해 기업실체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건전성은 기업실체의 장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유동성은 단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자산 항목의 일부와 대부분의 부채 항목은 기업실체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입의 직접적 원천이다. 또한,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자본이익률을 측정하여 기업실체의 경영성과

를 적절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 즉 회계이익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는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발생기준에 따라 측정된 이익정보는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측정치 보다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더 잘 나타내며, 현재의 회계이익은 현재의 순현금흐름 보다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예측에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실체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순현금흐름, 투자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현금배당을 포함한 자본거래 및 기업실체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실체와 소유주(주주)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및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2) 비상장기업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계량적 성격이지만 재무보고의 목적인 정보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을 일차적 특성이라고 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꼽고 있으며, 비교가능성과 비용효익의 균형 및 중요성 등 이차적 특성과 제약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정보는 상황에 따라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동등하게 간주된다. 목적적합성은 특히 상장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주주 및 투자자가 기업가치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회계정보가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뢰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 독립성과 검증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물론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위상과 관계가 상장기업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는 상장기업에 비해 단순하며 주주 및 투자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기존 주주라고 하더라도 기업가치변동에 따라 주식을 쉽게 처분하거나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며 기업가치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의 중요성은 상장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상장기업의 가장 주된 정보이용자라고 간주되는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담당자가 신용평가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사용한다면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목적적합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뢰성있는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담당자는 회계정보의 분석능력으로 볼 때 전문성이 높으며 재무제표 정보 외의 다른 정보원천을 확보할 수 있어 재무제표 정보의 목적적합성 부족문제를 보완하여 분석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보고의 측면에서도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정보의 속성이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세무당국에 의한 세무조사 및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은 매우 두려운 존재이다. 만일 신뢰성이 훼손되어 왜곡된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세무신고

서가 작성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코스트는 매우 크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일차적 질적 특성 중 더 중요한 특성을 꼽는다면 그것은 목적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²⁾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도입 로드맵(2007.3.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실무적용 가능성, 기업간 비교가능성, 실무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이원적 체계(Two-tier system)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회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의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도 이해관계의 정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기업회계기준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다.³⁾

비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될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나 개별적인 경제적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수에 있어서는 훨씬 많다. 2008년 12월말 현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수는 20,000여개로서 이 가운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1,700여개와 이들 회사의 연결대상 국내 종속회사 1,400여개를 제외하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인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거의 17,000여개에 이른다.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감법상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많은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보다는 향후 제정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준거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07년 10월 제정된 국가회계법을 토대로 정부도 2009년부터는 민간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전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비영리부문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벤치마크하여 회계기준의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을 고려해 볼 때 벤치마크 대상이 되는 회계처리의 준거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이와같이 많은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회계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도입추진단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전문에서 명시한 ‘간략한 회계기준’과 ‘회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제정과정이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세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마련을 위해 2006년 2월 발족하였다. 동 준비단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회계학회, 증권선물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 등 총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3) 기업회계기준전문 문단 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개정 2007.12.21).

먼저 황인태, 최종서, 강선민(2007)에 의해 수행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루었는데 첫째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도입배경과 기준제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일반적 고찰, 둘째는 국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실태를 표본조사하여 현행기준의 실효성 검토, 그리고 셋째는 IASB의 SMEs 기준 제정경위와 최근 발표된 공개초안 시안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상장법인 외에도 금감위 등록법인, 금융회사 및 기타 외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회계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상장기업에는 K-IFRS, 금감위 등록기업과 금융회사 및 기타 외감대상기업은 비상장기준서(또는 현행기업회계기준 : K-GAAP), 기타 외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준서(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은 '07.8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기본적인 제정방향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선택 가능한 방향으로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가는 방안과 IFRS for SMEs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08.5월 회계기준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비상장기업에 있어 국제적 정합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회계처리부담 경감과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다. 그리고 IFRS for SMEs가 Full IFRS에 비하여 인식과 측정 및 공시사항을 단순화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현재 IFRS for SMEs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IFRS for SMEs를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 K-GAAP를 기본 체계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08.6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하여 재무제표 작성 당사자인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러한 견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제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상장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인 작성자, 이용자, 감독자, 외부감사인, 학계를 대표하는 인원(12명)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전문위원회’를 '08.7월에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부분이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 제정(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IFRS for SMEs와 정합시켜 나가기로 예비적 결정을 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초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09년 1분기이후 기준서 초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2009년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조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T(Task-force Team)를 구성하여,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을 분석하고, 현행 회계기준과 세무회계 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세법과 실행가능한 조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최 관, 정영기, 박종일(2008)에 의해 수행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사, 금융/신용평가기관, 과세관청, 회계정책 감독기관, 교수의 6개 집단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총 624부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이원적 체계(Two-tier system)로 나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설문의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는 ‘회계처리 비용의 절감’,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능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와같은 응답결과를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의 전문내용과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쉽고 간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법이나 세무회계와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 당사자인 비상장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서 세법과의 일치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작성자의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제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은 투자 의사결정 보다는 신용 의사결정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이 지향하는 바가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회계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세법이나 세무회계 규정과의 일치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방향은 현행 K-GAAP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4) 2008년 4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각계전문가 8인으로 「기업회계·세무회계 조화 TFT」를 구성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관련 세무회계 조화 방안과 그 외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주요 차이점과 현행 회계기준과 세무회계 조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회계기준 제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형식상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이미 비상장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기준이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적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기준이 실제로 간편하고,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취지를 반영 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조화 방향

1. 조세의 목적과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으로 정의된다. 즉, 조세의 본래의 기능은 국가의 재원 조달에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납세자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납세자와 국가간의 조세채무·채권관계는 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되며,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납부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가장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의 정의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세금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규가 필요하다.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로 조세법규의 입법과 해석·적용에 걸쳐서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발전하여 왔으며 특히 입법의 지도원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식적인 원리로서 기능하는데 반해,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법률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원리로서 기능한다.

과거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태동한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은, 오늘날에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세에 대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원리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규범이 될 조세법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새로운 요건에 의해 소급과세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조세법률주의의 특성상 필수적인 것이다.

개개의 국민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 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이다. 여기서 담세력에 따라 납세의무

를 적절히 분배한다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등의 개념에는 수평적 평등 뿐만 아니라 수직적 평등이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조세가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 외에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세법의 일부 규정을 통해 규제와 유인, 경기조정 등의 정책을 수행한다. 이처럼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경감 또는 가중하는 조치를 조세특별조치라 한다. 조세특별조치는 개별적으로 그 조치의 정책목적이 합리적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그 조치에 의해 공평성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조세법의 기본원리는 행정적 편의(administrative convenience)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행정적 편의란 특정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이행비용이 과세를 통한 세수확보의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행비용에는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과세관청의 부과·징수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2. 재무회계와 세법의 조화방향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여 46개 항목의 주요 차이를 식별하였으며, 세법과 회계기준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조화가 가능한 18개의 항목을 학계(교수),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회계기준제정 및 감독기구(한국회계기준원 및 금융감독원), 작성자(기업의 회계담당자), 이용자(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업무 담당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과 심층 인터뷰절차를 통하여 선별하였다.⁵⁾ 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세법을 수용하여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쪽에서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12개를 선정하였으며, 세법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6개를 선정하였다.

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세법조항의 분석

세법조항을 회계기준에 수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해당 세법조항이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속성을 중요하게 훼손하는지의 여부와, 실무적 편의를 달성하고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가 이다. 앞서 살펴본 조세법의 기본원리를 회계정보의 질적속성인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과 비교해 보면, 목적적합성 측면에서는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목적적합한 회계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세무회계정보는 과거영업활동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를 확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수익과 비용만을 인정하고 공평성과 담세력을

5) 법인세법과 현행 회계기준간의 주요차이로 식별한 46개의 항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중시하여 재량적 회계처리와 자산과 부채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뢰성의 속성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부합되는 측면이 많다.

일반적으로 세법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확실적이며 명확하고 높은 검증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하부속성인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세법규정의 수용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충실성과 세법의 기본원리는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세법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실질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으나, 입법의 차원에서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확실적이며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어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회계와 조세의 목적 및 양 회계 실무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보고의 질을 중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세법조항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세무관련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다음에서 열거하는 항목들을 선택하였다.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표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최대한도는 추계액의 30%(2008년도까지는 35%)에 국민연금전환금납부액을 가산한 금액 - 퇴직보험 등 가입시 신고조정으로 일정금액 손금산입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의 개념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계리에 기초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비상장기업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세법상의 규정을 수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훼손될 수 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표 2〉 대손충당금 설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대상채권 : 모든채권(단, 장단기 구분이 없고, 미수채권은 모두 포함) - 대손설정 : 개별적 또는 경험률에 의해 추정하고 강제적으로 계상	- 대상채권 : 기업회계와 동일 - 대손설정 : 정률(1%, 2%) 또는 대손실적률로 한도만 규정(임의), 엄격한 대손요건

세법규정을 수용할 경우 실무상 편의를 제고하고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영업권 상각

〈표 3〉 영업권 상각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영업권 상각연수 미규정(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상각률을 한도로 상각

영업권의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세법과 같이 5년에 걸쳐 조기에 상각하도록 하는 것은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목적적합성은 다소 훼손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표 4〉 감가상각비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잔존가액 : 합리적 추정가액 • 영업내용연수 : 합리적 추정연수 • 상각방법 : 합리적 · 체계적인 것이면 모두 인정 • 기준서 제14호에 의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잔존가액 : 0(영) - 내용연수 : 자산종류별, 업종별로 내용연수 법정화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 생산량비례법 또는 균등액 상각의 4가지만 인정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세법의 감가상각규정을 기업회계에 적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행 세법 규정이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중요하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규정의 수용은 실무적 편의를 제고하고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산의 평가손실 인식

〈표 5〉 자산의 평가손실 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및 시장가치 급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이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실로 인식	-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채고자산, 유가증권 등 제외

채고자산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부동산 등은 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인한 회수가액가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부담이 있다. 세법에서와 같이 그 손실이 확정될 때에 인식하도록 하는 경우 신뢰성과 실무적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목적적합성이 훼손될 수 있다.

(6) 장기금전대차거래시 현재가치 평가

〈표 6〉 장기금전대차거래시 현재가치 평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현재가치로 평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현재가치평가에 따른 실무처리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모두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7) 국고보조금의 인식

〈표 7〉 국고보조금의 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할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 등으로 성격에 따라 처리함	목적에 관계없이 익금 산입(단,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하여 과세 이연하는 것을 허용)

국고보조금은 그 실질이 수익에 해당하므로 자산취득에 사용할 국고보조금도 기타의 국고보조금 또는 세법의 규정에서와 같이 즉시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8)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표 8〉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교환으로 취득한 이종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함 - 교환으로 취득한 동종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함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이종자산 또는 동종자산간의 교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임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을 구분하는 현행 기준의 의미가 없으며 취득당시 시가로 측정할 때 목적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9)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 인식시기

〈표 9〉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손익 인식시기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대상채권 및 일반자산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또는 건물 등은 소유권이전시점으로 하되, 법적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경우 그 시점	-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현재 양 규정간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세법의 규정을 도입하여 자산양도손익의 인식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10) 건설자금이자 계산

〈표 10〉 건설자금이자 계산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건설자금이자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방법을 선택적으로 허용. 단,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원칙 변경불가 •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취득기간 1년이상인 경우) • 자본화대상차입금-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중 자산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 계산: 특정차입금: 금융비용-일시적운용수익 일반차입금: (평균지출액-특정차입금)× 자본화이자율	- 건설자금이자: 반드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 - 기업회계기준상 대상자산에서 투자자산, 재고자산 제외 - 자본화대상차입금-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 계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운용자금 전용 차입금이자 제외)-건설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건설자금의 자본화는 현행기준에서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적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 단기공사손익 인식

〈표 11〉 단기공사손익 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진행기준 원칙 •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수가능원가기준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완성기준 적용가능	- 인도기준(완성기준) 원칙 - 결산에 반영한 경우 진행기준 인식

현행기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완성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실무적 편의를 높인다.

(12) 법인세비용

〈표 12〉 법인세비용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비용계상	- 손금불인정 ※ 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음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가 해소될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의 인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성의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용 대 효익을 고려할 때 법인세비용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세법개정시 수용을 고려할 수 있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분석

현행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수익, 비용 및 익금, 손금의 인정 차이(범위 및 시기)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이 과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납세자 측면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장부기장 및 보관, 결산, 세금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의 사후 검증, 세무 조사, 과세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내부비용(인건비, 교육비, 전산장비구입비 등)과 외부비용(상담, 용역비, 고문료, 세무조정비, 불복청구비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과세 당국의 업무의 부담과 비용, 업무의 복잡성과 난이도, 정보이용의 효율성, 업무의 편의도, 기타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세법에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는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

다음 항목들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기업회계 측면에서는 세법규정을 수용할 수 없는 항목이나, 세무관련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세법에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항목이다.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표 1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환산손익 불인정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는 하나 그 중요성이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세법에서도 환산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반기업에도 확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표 14〉 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고, 감액손실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함	유가증권 감액손실 불인정

세법에서는 역사적 원가에 의한 평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확정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감액손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유가증권 평가방법

〈표 15〉 유가증권 평가방법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법 - 매도가능증권 :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원가법 - 만기보유증권 : 원가법(상각후 취득원가)	-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무신고시 총평균법) - 주식 등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무신고시 총평균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 : 시가법

세법에서는 역사적 원가에 의한 평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확정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시가평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적이기는 하나 세법에서도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시가법을 인정하고 있다.

(4) 무상주의 취득원가

〈표 16〉 무상주의 취득원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함(주식수와 단가만 조정)	-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은 자본금/주식수) 단,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GAAP과 동일

의제배당은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무상주의 취득과 같이 주식수와 단가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인식

〈표 17〉 공사손실충당부채 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잔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 기간 중 인식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초과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보고함	- 미확정비용인 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사손실충당부채 불인정

〈표 18〉 하자보수충당부채인식

현행 기업회계기준	세 법
• 공사종료 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함	- 미확정비용인 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하자보수충당부채 불인정

세법에서 충당부채와 관련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미확정손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또한 기업회계와의 근본적 차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발생주의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관행도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공사손실과 객관적으로 추정가능한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V.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비상장기업과 재무제표의 주요이용자인 채권자 및 과세관청,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감독기구, 회계사, 세무사 및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08년 10월중 실시된 설문을 통하여 총 25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제정·감독기구를 제외한 각 소속집단별로 30 내지 40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다양한 집단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설문응답자의 구성은 <표 19>와 같으며, 모든 설문은 등간 5점 척도로 실시되었다.

<표 19> 설문응답자의 구성

소속집단		빈도	비율(%)
작성자	기업	42	16
이용자	평가기관	40	16
	과세관청	34	13
제정·감독	기준원·감독원	23	9
조력자·전문가	회계사	39	15
	세무사	36	14
	교수	42	16
합계		256	100

1.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과 세법과의 조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세법과의 조화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① 비상장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주된 외부이용자, ③ 세법과의 조화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속성 등에 미치는 영향, ④ 세법과 기업회계의 불일치로 인한 실무적인 부담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20>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의사결정 항목에 대한 설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의 평균이 4.27점(평균>3, $p<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카이제곱검정, $p<0.01$). 소속집단별로도 과세관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신용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 설문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세무행정(평균 3.98>3, $p<0.01$)과 투자의사결정(평균 3.85>3, $p<0.01$)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평균보다는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는 신용의사결정과 세무행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ANOVA검정, $p < 0.01$). Scheffe의 사후검정결과, 신용의사결정의 경우 동일평균집단으로 분명히 나뉘지지는 않으나, 기업, 감독기관, 과세관청 및 회계사는 동일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집단의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세무사집단 보다 높으며 교수 및 평가기관의 점수보다 낮게 형성된다. 세무행정의 경우에도 개별집단을 몇몇 동일집단군으로 분명히 구분할 수는 없으나, 평가기관, 과세관청 및 교수집단이 가장 높은 동일평균집단으로 구분되었다($p = 0.795$).

〈표 20〉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 유용성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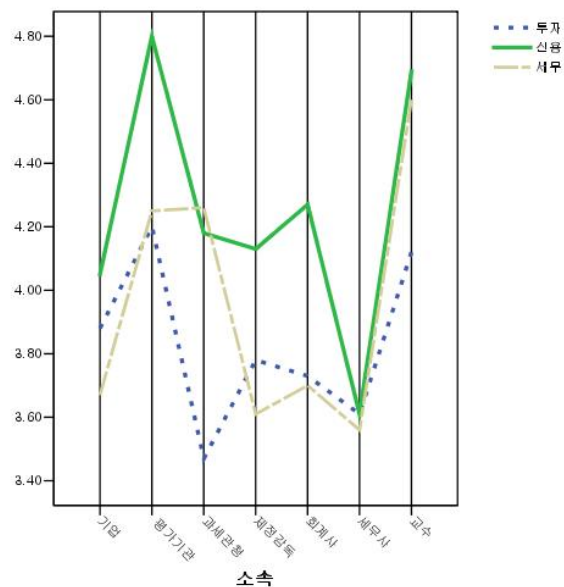
질 문	평 균	표준편차	χ^2 - 값	유의수준
•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3.85	1.08	94.38	$p < 0.01$
• 금융기관의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4.27	0.75	128.80	$p < 0.01$
•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98	0.90	59.48	$p < 0.01$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표 21〉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 유용성측면 : 소속집단별 결과

소 속	구 분	투자의사 결정	신용의사 결정	세무 행정
기 업	평 균	3.88	4.05	3.67
	표준편차	0.97	0.58	0.87
평가기관	평 균	4.20	4.80	4.25
	표준편차	0.88	0.41	0.63
과세관청	평 균	3.47	4.18	4.26
	표준편차	1.21	0.72	0.96
제정감독	평 균	3.78	4.13	3.61
	표준편차	1.17	0.97	0.94
회계사	평 균	3.73	4.27	3.70
	표준편차	1.10	0.77	1.00
세무사	평 균	3.61	3.61	3.56
	표준편차	0.96	0.69	0.77
교 수	평 균	4.12	4.69	4.60
	표준편차	1.19	0.47	0.54
ANOVA	F-값	2.28	14.59	9.49
	유의확률	0.04	0.01	0.01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주된 외부이용자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1순위로 금융기관(44%)과 현재 주주(40%)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주주와 채권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이 재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순위 이용자로써 금융기관(27%), 기타 채권자(21%), 과세관청(17%)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와 4순위 이용자에는 과세관청이 각각 25%와 26%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채권자와 현재의 주주를 제외할 경우 과세당국이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의 주된 이용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 시 세무행정과 과세관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 질적속성과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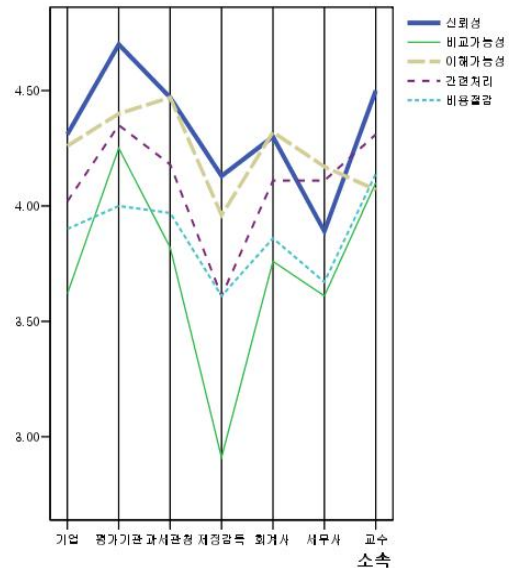
질 문	평균	표준편차	χ^2 - 값	유의수준
• 회계정보의 신뢰성 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4.35	0.66	176.67	p<0.01
• 상장기업과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이 서로 높아야 한다.	3.78	1.01	119.46	p<0.01
• 회계정보작성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4.25	0.75	123.29	p<0.01
•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4.13	0.86	175.17	p<0.01
• 회계처리비용 을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3.90	0.98	123.55	p<0.01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표 23〉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 질적속성과 편의성 : 소속집단별 결과

소속	구분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간편 처리	비용 절감
기업	평 균	4.31	3.62	4.26	4.02	3.90
	표준편차	0.56	0.99	0.77	1.00	0.93
평가 기관	평 균	4.70	4.25	4.40	4.35	4.00
	표준편차	0.46	0.78	0.67	0.74	1.06
과세 관청	평 균	4.47	3.82	4.47	4.18	3.97
	표준편차	0.61	0.94	0.61	0.80	1.19
제정 감독	평 균	4.13	2.91	3.96	3.61	3.61
	표준편차	0.69	1.16	0.71	1.12	1.12
회계사	평 균	4.30	3.76	4.32	4.11	3.86
	표준편차	0.81	0.98	0.82	0.81	0.86
세무사	평 균	3.89	3.61	4.17	4.11	3.67
	표준편차	0.67	0.90	0.85	0.67	0.76
교수	평 균	4.50	4.10	4.07	4.31	4.14
	표준편차	0.51	1.01	0.71	0.81	0.93
ANOVA	F-값	6.67	5.89	1.93	2.35	1.22
	유의확률	0.01	0.01	0.08	0.03	0.29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보 속성과 편의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의 평균이 4.35점(평균>3, $p<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카이제곱검정, $p<0.01$). 다음으로는 작성자의 이해가능성(평균 4.25점>3, $p<0.01$)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평균 4.13>3, $p<0.01$)이 평균 4점 이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카이제곱검정, $p<0.01$). 소속집단별로는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성, 비교가능성 및 간편처리 질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ANOVA검정, $p<0.05$). 한편, 회계사, 세무사 및 과세관청에서는 작성자의 이해가능성의 향상이 신뢰성의 향상보다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회계사 및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현행 회계기준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모델로 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실무적용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cheffe의 사후검정에서는 신뢰성, 비교가능성 및 간편처리 모두에서 분명한 동일집단군이 구분되지는 않았다. 다만 간편처리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감독기관을 제외한 다른 집단이 동일평균집단으로 구분되어, 감독기관의 낮은 점수가 집단별 차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법과의 조화를 적극 고려한다면 의사결정의 유용성과 정보속성·편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무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의 평균이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소속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ANOVA검정, $p=0.38$). 나머지 항목의 평균은 모두 3점대로 평균값이 크지 않으나, 사용의 편리성(평균 3.64), 회계처리비용의 절감(평균 3.61) 및 작성자의 이해가능성(평균 3.59) 항목에서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다(카이제곱검정, $p<0.01$).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응답(평균<3)하지는 않았으며, 신용의사결정과 신뢰성에 대하여는 투자의사결정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소속집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작성자 편의항목(편리성, 비용절감 및 이해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집단은 세법과 기업회계의 불일치로 인한 현재 실무적 부담에 대하여 평균 3.79점으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으며, 세법과 기업회계의 조화를 통해 업무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평균 4.05)하였다. 그러나 인건비, 교육비 등의 실질비용의 경감 정도는 평균 3.62점으로 응답하여 업무경감에 대한 기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세무행정, 간편처리, 비용절감의 항목 외의 정보속성과 이해가능성 항목에 관하여는 소속집단별 응답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ANOVA검정, $p<0.01$). 특히 제정감독기구는 세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경우 신뢰성(평균 2.48<3, $p<0.01$)과 비교가능성(평균=2.87<3, $p<0.01$)이 모두 훼손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신뢰성의 하부 속성인 표현의 충실성, 검증가능성, 객관성에 관한 문항에서도 제정감독기구는 모든 하부속성이 훼손될 것으로 응답(평균<3, $p<0.01$)하였다. 반면 회계사 집단의 경우 표현의 충실성이 훼손될 것으로 응답(평균<3, $p<0.01$)하였으며, 나머지 집단에서는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이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평균>3, $p<0.01$)하였다.

Scheffe의 사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감독기관, 교수, 기업 및 회계사집단과 세무사, 과세관청 및 평가기관으로 동일집단군이 구분되었다. 감독기관 등은 세법규정의 수용시 투자의사결정의 유용성이 하락(최대평균점수<3.00)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세무사 등은 상승(최소평균점수>3.41)할 것으로 응답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신용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감독기관, 교수 및 회계사집단은 부정적인 응답(최대평균점수<3.05)을 하였으며, 세무사, 과세관청 및 평가기관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최소평균점수>3.39)을 하여 구분되었다. 세무행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일집단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회계사 및 세무사집단(최대평균점수<3.22)보다 교수, 과세관청 및 평가기관에서 높은 동일평균(최소평균점수>3.64)을 나타냈다. 비교가능성, 비용절감 및 간편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동일집단군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이해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을 제외한 집단에서 동일평균집단이 형성되어, 신용평가기관에서 특히 높은 이해가능성 제고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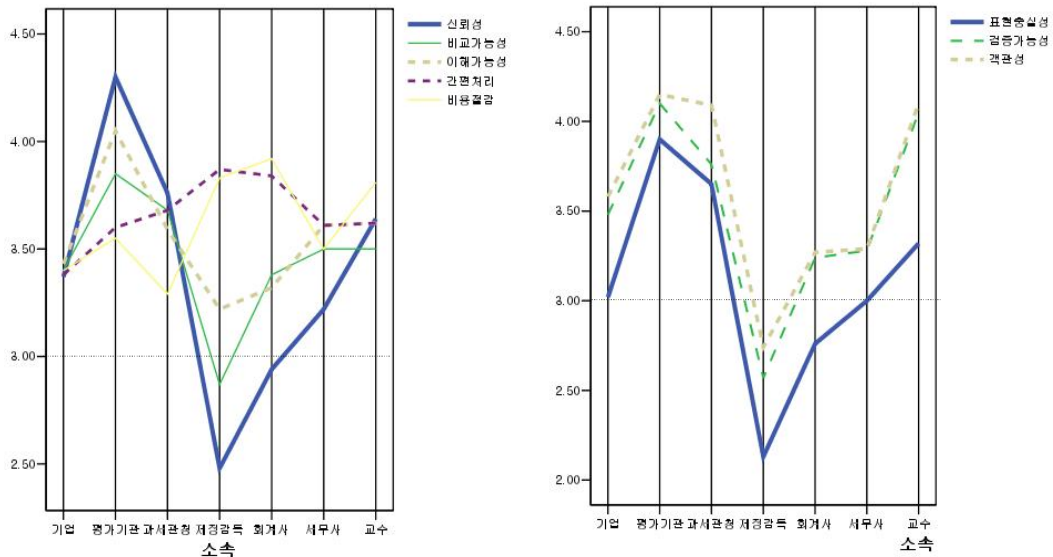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신용의사결정에 유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아울러 작성자의 이해가능성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관청을 채권자 및 현재 주주 다음으로 중요한 재무제표이용자로 보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세무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회계기준 제정시 세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경우 세무행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작성자의 편의와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그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반면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감독기관에서는 세법과의 조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여 분명한 우려를 나타냈다.

〈표 24〉 회계기준에 세법규정 수용시의 영향

질 문	평 균	표준편차	χ^2 - 값	유의수준
•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에 더욱 유용해진다.	3.18	1.11	59.35	p<0.01
• 금융기관의 신용 의사결정 에 더욱 유용해진다.	3.30	1.02	88.48	p<0.01
•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에 더욱 도움이 된다.	4.43	0.75	302.02	p<0.01
• 회계정보의 신뢰성 이 향상된다.	3.45	1.10	65.59	p<0.01
• 타 비상장기업과의 비교가능성 이 높아진다.	3.49	0.95	155.72	p<0.01
• 회계정보작성자의 이해가능성 이 높아진다.	3.59	0.89	147.30	p<0.01
• 회계처리비용 이 절감된다.	3.61	1.04	84.19	p<0.01
• 사용이 쉽고 간편 해진다.	3.64	0.93	121.08	p<0.01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표 25〉 회계기준에 세법규정 수용시의 영향 : 소속집단별



소 속	통계량	투자 의사결정	신용 의사결정	세무행정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간편처리	비용절감
기 업	평 균 표준편차	3.00 0.91	3.19 0.89	4.26 0.83	3.37 0.92	3.40 1.11	3.43 0.99	3.40 1.13	3.38 1.15
평가기관	평 균 표준편차	3.95 0.81	4.00 0.78	4.40 0.74	4.30 0.65	3.85 0.80	4.05 0.68	3.55 1.13	3.60 0.98
과세관청	평 균 표준편차	3.41 1.05	3.88 0.69	4.59 0.61	3.76 0.89	3.68 0.94	3.59 0.61	3.29 1.29	3.68 1.01
재정감독	평 균 표준편차	2.26 0.54	2.35 0.57	4.39 0.89	2.48 0.73	2.87 0.97	3.22 0.85	3.83 0.83	3.87 0.87
회계사	평 균 표준편차	3.00 1.11	3.05 0.94	4.43 0.77	2.94 1.00	3.38 1.09	3.32 1.00	3.92 0.92	3.84 0.87
세무사	평 균 표준편차	3.56 0.69	3.39 0.77	4.33 0.68	3.22 0.64	3.50 0.61	3.61 0.60	3.50 0.85	3.61 0.90
교 수	평 균 표준편차	2.79 1.47	2.95 1.34	4.60 0.73	3.64 1.57	3.50 0.89	3.62 1.08	3.81 0.89	3.62 0.58
ANOVA	F-값 유의확률	9.64 0.01	12.03 0.01	1.07 0.38	11.42 0.01	3.08 0.01	3.45 0.01	1.90 0.08	1.10 0.36

주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2.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 방안

세법조항을 회계기준에 수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해당 세법조항이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속성을 중요하게 훼손하는지의 여부와, 실무적 편의를 달성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법의 조항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수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한 12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 1> 내지 <표 12>와 같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 (1) **실무적 필요성** : 실무적으로 회계·세무 업무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논리적 타당성** : 기업회계와 세법의 목적 및 기본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도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을 수용하는 것이**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유용성을 중요하게 훼손하지 않아 타당성이 인정된다.

먼저 회계기준에서 ‘세법조항을 수용하는 것이 회계·세무 업무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결과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실무적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감가상각비 규정(평균 3.6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설자금이자(평균 3.48), 양도손익의 귀속시기(평균 3.45), 단기건설공사손익의 인식(평균 3.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집단별로도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및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응답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이 있다(ANOVA검정, $p>0.05$). 영업권상각, 장기금전대차거래시 현재가치평가, 국고보조금, 대손충당금 및 자산교환시 회계처리에서도 평균 3.30이상의 응답을 하였으며 자산의 평가,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비용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회계기준에서 세법규정을 수용하더라도 비상장기업의 회계정보유용성을 중요하게 훼손하지 않아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표 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도손익의 귀속시기(평균 3.24), 감가상각비(평균 3.17), 건설자금이자(평균 3.15), 단기건설공사의 손익시기(평균 3.12)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평균 >3 , $p<0.01$)을 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보통이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실무적 필요성 보다 논리적 타당성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소속집단별로는 제정감독기구와 교수집단에서 세법규정의 수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소속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ANOVA검정, $p<0.01$).

〈표 26〉 세법규정 수용의 실무적 필요성

소 속	전 체		χ^2 검정	기 업	평가 기관	과세 관청	제정 감독	회계사	세무사	교수	ANOVA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chi^2 - 값$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F-값
감가상각	3.65	1.07	104.46 **	3.64	3.65	3.82	3.35	4.03	3.33	3.61	1.81
건설자금이자	3.48	1.02	106.59 **	3.71	3.75	3.47	3.35	3.45	3.17	3.36	1.59
양도귀속시기	3.45	1.06	102.55 **	3.60	3.40	3.41	3.35	3.66	3.28	3.40	0.60
단기공사	3.44	1.08	86.12 **	3.57	3.50	3.44	3.52	3.74	3.39	2.95	2.13 *
영업권	3.38	1.08	91.55 **	3.43	3.45	3.24	2.78	3.66	3.28	3.56	2.04
현재가치	3.38	1.07	82.78 **	3.31	3.65	3.47	2.70	3.45	3.22	3.55	2.48 *
국고보조금	3.37	1.05	90.90 **	3.52	3.60	3.12	2.74	3.58	3.33	3.38	2.52 *
대손충당금	3.34	1.10	95.25 **	3.40	3.40	3.65	2.52	3.18	3.67	3.29	3.45 **
자산교환	3.30	1.07	74.94 **	3.20	3.75	3.47	2.83	3.32	3.11	3.26	2.42 *
자산평가	3.28	1.10	86.91 **	3.33	3.65	3.24	2.74	3.13	3.22	3.39	1.96
퇴직충당금	3.20	1.10	85.76 **	3.29	3.75	3.18	2.35	3.03	3.39	3.10	4.84 **
법인세비용	3.16	1.20	34.24 **	3.24	3.45	2.91	2.57	2.82	2.94	3.86	5.18

주 : 1.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실무적 필요성과 논리적 타당성 질문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단기건설공사손익의 인식규정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도 ‘보통’ 수준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규정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세법규정을 수용할 경우 회계정보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제고하고 작성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인 수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세법규정 수용의 이론적 타당성

소 속	전 체		χ^2 검정	기업	평가 기관	과세 관청	제정 감독	회계사	세무사	교수	ANOVA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chi^2 - 값$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F-값
양도귀속시기	3.24	1.09	67.57 **	3.33	3.55	3.38	2.74	3.21	3.11	3.17	1.63
감가상각	3.17	1.04	83.52 **	3.38	3.45	3.41	2.39	3.42	3.17	2.66	5.87 **
건설자금이자	3.15	1.08	71.41 **	3.29	3.55	3.35	2.91	3.21	2.89	2.74	2.95 **
단기공사	3.12	1.07	79.10 **	3.12	3.45	3.35	2.65	3.45	3.28	2.43	5.90 **
자산교환	3.05	1.20	40.80 **	2.85	3.65	3.26	2.39	2.95	3.28	2.76	4.14 **
국고보조금	3.03	1.17	45.73 **	3.05	3.50	3.24	2.39	3.13	2.94	2.71	3.14 **
자산평가	3.01	1.16	41.35 **	2.88	3.80	3.12	2.13	2.53	3.39	2.88	8.64 **
현재가치	3.00	1.04	78.16 **	2.95	3.75	2.91	2.35	3.24	3.06	2.52	7.89 **
법인세비용	2.97	1.21	32.82 **	3.24	3.65	2.76	2.48	2.58	3.00	2.83	4.28 **
영업권	2.95	1.02	85.57 **	3.17	3.30	3.06	2.30	3.11	3.00	2.46	4.84 **
퇴직충당금	2.90	1.11	54.75 **	2.95	3.45	3.26	2.26	2.63	3.17	2.38	6.48 **
대손충당금	2.81	1.19	34.08 **	2.76	3.35	3.21	2.09	2.47	3.17	2.40	5.93 **

주 : 1.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3. 세법에서 현행 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 방안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세법규정을 수용할 수 없는 항목이나, 조세의 목적과 세법의 기본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6개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28>과 <표 29>와 같다. 구체적인 설문내용과 측정척도는 앞의 2절과 동일하다. 실무적으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유가증권의 감액 및 공정가액 평가규정 순으로 세법에 수용될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평균값도 보통(평균 3)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속집단별 평균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NOVA검정, $p < 0.01$).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의 평균이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가증권의 감액,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무상주 회계처리에 대하여도 평균 3.4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가증권의 평가 및 감액규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도 세법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28〉 회계기준 수용의 실무적 필요성

소 속	전 체		χ^2 검정	기업	평가 기관	과세 관청	제정 감독	회계사	세무사	교 수	ANOVA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chi^2 - 값$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F-값
외화평가	3.74	1.02	109.80 **	3.57	3.75	3.53	3.39	3.92	3.56	4.26	3.27 **
유가증권감액	3.51	1.03	110.78 **	3.55	3.90	3.12	3.13	3.08	3.50	4.05	5.94 **
유가증권평가	3.50	1.06	96.16 **	3.43	3.95	3.35	2.96	2.95	3.28	4.26	9.54 **
무상주	3.43	1.06	80.63 **	3.26	3.80	3.29	3.35	3.39	2.94	3.83	3.60 **
하자보증충당금	3.40	1.04	89.25 **	3.02	3.90	3.38	3.48	2.92	3.22	3.86	5.92 **
공사보증충당금	3.38	1.04	82.31 **	3.05	3.80	3.41	3.39	2.92	2.94	4.07	8.48 **

주 : 1.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표 29〉 회계기준 수용의 이론적 타당성

소 속	전 체		χ^2 검정	기업	평가 기관	과세 관청	제정 감독	회계사	세무사	교수	ANOVA
구 분	평 균	표준 편차	$\chi^2 - 값$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F-값
외화평가	3.58	1.13	66.35 **	3.26	3.55	3.71	3.04	3.47	3.67	4.17	3.70 **
유가증권감액	3.43	1.14	49.80 **	3.36	3.65	3.47	2.96	3.03	3.17	4.12	5.02 **
유가증권평가	3.42	1.09	65.73 **	3.31	3.75	3.32	2.65	3.05	3.22	4.19	8.18 **
무상주	3.40	1.10	79.14 **	3.19	3.60	3.29	3.17	3.39	3.11	3.90	2.68 *
공사보증충당금	3.31	1.08	64.98 **	2.95	3.85	3.32	3.04	2.89	2.94	4.00	8.31 **
하자보증충당금	3.30	1.09	61.84 **	2.98	4.00	3.26	3.04	2.92	2.89	3.83	8.09 **

주 : 1. 유의수준 : ** ($p < 0.01$), * ($p < 0.05$)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V. 실행 방안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이 제정되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에 세법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비상장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보고의 목적과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세무관련 전문가와의 심

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신용의사결정에 유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아울러 작성자의 이해가능성 제고와 회계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관청을 채권자 및 현재 주주 다음으로 중요한 재무제표 이용자로 응답하였으며, 이와 일관되게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에 세무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회계기준 제정시 세법과의 조화를 고려할 경우 세무행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작성자의 편의와 신뢰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그 기대치는 높지 않았다. 반면 회계기준 제정기구와 감독기관에서는 세법과의 조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여 분명한 우려를 나타냈다.

둘째, 비상장회계기준에 세법규정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건설자금이자,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및 단기건설공사손익의 인식규정에 대한 실무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도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위 항목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을 보다 쉽고 명확한 세법규정으로 통일시킨다면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법에서 회계기준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및 감액손실의 인정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론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위의 항목은 세법의 관점에서는 자산의 임의평가에 해당하며 미실현손익의 과세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자산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평가손익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세법의 기본원칙을 바꾸어야 하는 항목으로 현실적으로 그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는 세법의 역사적 취득원가에 의한 평가원칙에 위배되며, 공사손실충당부채의 경우 미확정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모든 비상장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상장기업은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상장이면서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상장기업 못지않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회계처리능력이 우수한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영세한 기업들은 종업원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아서 회계처리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매우 적다. 많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소유주와 몇 군데의 거래처, 그리고 거래 은행에 국한된다.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적절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알아보려는 목적도 있지만 과세소득의 산출과 외부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규모의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세법과의 조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된 특례규정을 비상장 기업회계기준에서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인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장기업과 동일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시 세법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경우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조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지, 그리고 회계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고 회계처리의 간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용의 간편성과 회계처리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세법과 적극적으로 조화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전체 비상장기업에서 “대규모”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상장기업을 배제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 중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세법과 회계기준이 적극적으로 조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될 경우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수정·보완할 내용이나 세법과의 조화에 대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300,000개 이상 되는 주식회사 중 1,700여개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포함)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상장기업이며, 이중에서 자산규모 100억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20,000여개에 불과하며, 1조 이상의 자산규모인 비상장기업도 100여개에 달하는 등 비상장기업은 그 규모나 특성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특례적용대상인 비상장기업은 회계정보의 공공성이 낮을 수 있고 회계정보의 생산비용이 효익보다 클 수 있으므로, 회계기준과 세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화된 내용으로 특례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세법의 양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화방향을 모색하여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중 자산규모가 아주 크거나 채권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비상장대기업 예를 들면,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대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은 그 내용면에서는 세법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규모나 특성면에서 매우 다양한 비상장기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장 대기업’, ‘일반 비상장기업’, ‘특례적용대상 비상장중소기업’으로 나누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8. 『IFRS개요 · 로드맵 · 해외도입사례』
- 기획재정부 세제실. 2008. 『기업회계 · 세무회계 조화 TFT』 자료
- 김경호 · 정영기 · 이영한 · 김정태. 2007.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검토와 영향분석” 한국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 김규호. 2008.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논문.
- 김문철 · 이준규. 2008.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 김찬홍 · 윤정원. 2008.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한국회계기준원.
- 이영한. 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13-3).
- 전홍렬. 2006.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과제” 상장협연구 제54호.
- 최 관 · 정영기 · 박종일. 2008.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에 관한 설문연구” 한국회계기준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2007. 『K-IFRS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 한국회계기준원. 2007.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 황인태 · 최종서 · 강선민. 2007.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기준원.

Harmoniz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with the Tax Law under K-IFRS Environment

Kim, Kyung Ho* · Chung, Young Kee**

Yoon, Jae Won*** · Park, Soo Hwan****

— <Abstract> —

With the introduction of IFRS,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has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more simplified, reference-based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certain modifications or improvements to existing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KGAAP).

In this sense, the current development of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ppears to b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as it aim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preparers and reduce unnecessary additional costs due to changes in the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that un-listed companies are already familiar with and currently apply.

Unfortunately, the current develop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do not provide adequate suggestions on specific alternatives to satisfy the need for more simplified accounting standards and reduce unnecessary accounting burdens for un-listed compan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alternatives with respect to the simplification of accounting treatments for un-listed companies through certain reconciliation with existing tax laws.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existing KGAAP were comparatively reviewed and key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46 areas. Within these 46 areas, certain items were selected which addressed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CITL and KGAAP, respectively, and could be considered to reconcil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a result, a total of 12 items from the KGAAP and six items from the CITL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provide alternatives to mutually narrow differences in treatments between the CITL and the KGAAP.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 Deputy CEO, Samil PwC

In addition, using a questionnaire with responses provided on a scale of one-to-five, a group of tax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were surveyed to understand their general perspectives on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the practical necessity and reasonableness in accepting certain tax treatments to reconcile associated differences, and the practical necessity and reasonableness of amending existing tax law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survey results.

First,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in Korea are the increased usefulness in assessing creditworthiness as well as the comprehensibility and convenience of preparers.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corporation of the CITL to KGAAP, survey results indicated there is a real practical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gnition provisions for depreciation expense, construction capital interest, recognition period for capital gains and losses and gains and losses on short-term construction contracts.

Third, with respect to the incorporation of KGAAP to the CITL,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recognition for evaluation of foreign currency-denominated assets and liabilities and marketable securities as well as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are necessary in practice and theoretically reasonable.

When specific regulations are designed to reconcile certain differences between tax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benefit of un-listed companie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cope of coverage as un-listed companies come in a variety of scale and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the application of specific regulations designed for un-listed companies may need to be limited to small and medium-scale un-listed companies, while large scale un-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ed standards applicable to public companies.

<Key words> accounting standards for un-listed companies, accepting certain tax treatments, necessity of amending existing tax laws.

〈부록〉 법인세법과 현행 기업회계기준간의 주요차이분석

(46개 항목중 설문에서 제외된 28개 항목)

구분	개별항목	K-GAAP	관련 기준서	세 법	관련 법령	결산/ 신고조정 항목
1	재고자산의 취득에 따른 국공채 매입시 취득원가	-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기준 제 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기준 제4장 55조	- 재고자산(용지포함)취득시첨가하여 매입한 국공채의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유형자산과 관련한 강제매입 채권차액은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됨	서면2팀 - 1345	신고조정 사항
2	전기오류수정 손익의 귀속시기	-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함 -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함	기준서 제1호 문단 23	- 그 손익의 성격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이 원칙	별도규정 없으나 법 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준용	신고조정 사항
3	무형(유형) 자산 감액 손실 인식	-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함	기준서 제3호 문단67 기준서 제5호 문단36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 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함	서면2팀 - 2184	결산조정 사항
4	현물접대비의 평가	- 현물접대비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	기준서 제4호 문단9회계 제8360-00161	- 현물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법령 제37조 1항	신고조정 사항
5	반품추정부채 설정	- 반품가능판매의 경우 반품추정액을 수익에서 차감함	기준서 제4호 문단 15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 산입하여 유보처분함	서면2팀 - 65	신고조정 사항
6	일반법인의 이자수익 인식시기	- 발생기준(유효이자율법 적용)	기준서 제4호 문단28,29	실제로 받은날 또는 받기로한날 등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하여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함	법령 제70조1항1호 소령 제45조	신고조정 사항
7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이자수익 인식시기	- 발생기준(유효이자율법 적용)	기준서 제4호 문단28,29	- 현금기준(선수이자제외)원칙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하여 기간경과분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함	법령 제70조 1항 1호	신고조정 사항

구분	개별항목	K-GAAP	관련 기준서	세 법	관련 법령	결산/ 신고조정 항목
8	유 형 자 산 복구비용의 취 득 원 가 해당여부	-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사용 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자산을 제거,해체하 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총당부채의 인식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 의 현재가치(복구비용)을 유 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기준서 제5호 문단 12	- 복구비용에 대한 총당부채를 당 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 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 구비용총당부채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총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 - 11425	신고조정 사항
9	고가매입시 취 득 원 가 산정	- 유형자산 : 공정가액 - 유가증권 : 제공한 대가의 시 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 함한 가액	기준서 제5호문단 12기준서 제8호문단17	- 특수관계자인 경우 시가 - 특수관계자 이외의 경우 정상가 액(시가±30%)차액은 기부금으 로 의제	법령제88 조1항1호 법령제35 조2호	신고조정 사항
10	자본적 지 출에 대한 상각범위액	취득시점부터 회계연도 종료일 까지의 상각대상 기간은 일 단 위, 주 단위, 월 단위 및 6월 단 위 등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단 위를 선택하여 상각함	기준서 제5호 실무의견서 1999-6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달부터 윤택상각 하지 않고 기존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상각범위 액을 계산	법령 제72조 4항 1호	신고조정 사항
11	투자자산으 로 재분류 된 유형자 산의 감액 손실 인식	-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 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 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함.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 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 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 실 발생 여부를 매기말 검토함	기준서 제5호 문단41	- 법인이 운영하던 일부 사업장 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용하 던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 하여 이를 기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 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서면 2팀 - 2341	신고조정 사항
12	특수관계자 인 개인으 로 부 터 의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 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	기준서 제8호 문단 17	-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 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 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령 제72조 2항1호 법기통 41-72...1	신고조정 사항
13	전환증권의 발행시 전 환권대가의 인식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 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 인수권대가로 인식	기준서 제9호 문단 6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등 가치 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차감 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 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 는 익금산입(기타)하며, 상환할증 금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법기통 40-71...2	신고조정 사항

구 분	개별항목	K-GAAP	관련 기준서	세 법	관련 법령	결산/ 신고조정 항목
14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가액	- 전환권 행사시 지분증권의 취 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 액으로 함. 다만, 교부받은 지 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 에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 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영업외 손익)으로 인식함	기준서 제9호 문단 20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 2팀 - 1680	신고조정 사항
15	연지급수입 과 지급이 자 비용인식	-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함	기준서 제10호 A22	-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자재의 매 입부대비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 산함.	법령 제72조 3항 2호	신고조정 사항
16	재 고 자 산 저가법 적용	- 저가법 적용 사유 발생시 법 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여하 에 불구하고 강제로 평가손실 을 계상	기준서 제10호 문단 22	-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과 세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이를 용인	법령 제74조 1, 3항	신고조정 사항
17	장기공사손 익(용역· 예 약 매 출 포함) 인식	- 진행기준원칙 -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 우 회수가능원가기준 적용	기준서 제12호 문단 25, 36	- 진행기준원칙 -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완성기준)적용	법령 제69조 2항	신고조정 사항
18	채무의 조 건 변 경 에 의한 채권 채무조정	- 채무자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 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 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 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 이렇 게 인식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함 으로써 이자비용으로 인식 - 채권자 :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 을채권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 로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 와 채권의 대손충당금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대손충 당금과대손상각비로 조정하고, 당해대손충당금은 유효이자율 법에 따라이자수익으로 인식	기준서 제13호	- 채무자 : 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 이익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익 금으로 인정하지않으며,향후 당 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 으로써계상된 이자비용도 손금 으로 불인정 - 채권자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 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 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 를 익금에 산입	기본통칙 34-62...9 법령 62조 5호	신고조정 사항
19	지분변동액 회계처리	- 지분법투자주식 관련 지분변 동액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의 원천에 따 라 회계처리함	기준서 제15호 문단 15~2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 인정 하지 않음	서면 2팀 - 381	신고조정 사항

구분	개별항목	K-GAAP	관련 기준서	세 법	관련 법령	결산/ 신고조정 항목
20	부채성 충당금 인식	- 모든 부채성충당금 인정 - 계상을 강제함 - 합리적기준에 의해 계상	기준서 제17호	-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 상채권상각충당금, 퇴직연금충 당금, 일시상각충당금만 인정 - 임의적인계상 - 일정한도내에서인정	법법 제40조, 법령 제19조	결산/ 신고조정 사항
21	자본잉여금	-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 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 시키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으로 처리함	기준서제21 호문단46	-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을 익금으 로 보아 과세	법법 제15조, 법령 제11조	신고조정 사항
22	자기주식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거래 이므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 지 아니함	기준서제21 호 문단46.47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입	법령 제11조 2호	신고조정 사항
23	잉여금의 자본전입	-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함 (주식 배당 포함)	기준서제21 호문단49 개념체계문 단66	-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시 자산의 증가로 보아 과세	법법 제16조 1항 2호	신고조정 사항
24	준비금 계상	- 규정 없으며, 잉여금처분항목 으로 간주됨	기준서 제21호 A32	- 신고조정 허용	법법 제61조 1항	결산/ 신고조정 사항
25	이자비용	- 전액 비용 인정	기준서 제21호 A95	- 지급이자중 일부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가산	법법 제28조 법칙 제44조	신고조정 사항
26	기부금	- 전액 인정	기준서 제21호 A95	- 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인정	법법 제24조	신고조정 사항
27	합병,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기존주식의 장부가액(인적분 할의 경우 기존주식의 장부가 액을 신고부주식에 배분)	기업인수합 병등에관한 회계처리 준칙 제2장 매수6. 매수원가 나.6-5	- 기존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 액과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 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가산	법령 제12조	신고조정 사항
28	부당행위계 산부인	- 공정한 거래는 모두 인정	별도 규정 없음	- 특수인과의 비정상거래 불인정	법법 제52조 1항	신고조정 사항